

하동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387호 2013.11.15 (금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조례

- 하동군 조례 제2021호
- 하동군 조례 제2022호
- 하동군 조례 제2023호
- 하동군 조례 제202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7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규칙

- 하동군 규칙 제1094호
- 하동군 규칙 제1095호
- 하동군 규칙 제109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9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1

고시

- 하동군 고시 제2013-64호
- 하동군 고시 제2013-66호
- 하동군 고시 제2013-6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1차)	43
2013년 하동군 수협장 설정 2차 및 변경고시	45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2차)	50

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13-674호
- 하동군 공고 제2013-676호
- 하동군 공고 제2013-687호
- 하동군 공고 제2013-689호
- 하동군 공고 제2013-692호

201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5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53
제10회 하동군자원봉사상 시상계획 공고	54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58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9

회 람									
--------	--	--	--	--	--	--	--	--	--

하동군공보

(2) 제387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1월 15일

하동군수

하동군 조례 제202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나목을 삭제한다.

사. 슬로시티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감사실 가. ~ 바. (생략) <u>(신 설)</u> 2. ~ 4. (생략) 5. 문화관광과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나. <u>슬로시티에 관한 사항</u> 다. ~ 마. (생략) 6. ~ 13. (생략) 	<p>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슬로시티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u> 2. ~ 4. (현행과 같음) 5. ----- 가. ----- 나. <삭제> 다. ~ 마. (현행과 같음) 6. ~ 13. (현행과 같음)

하동군공보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1월 15일

하동군수

하동군 조례 제202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615명”을 “6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2명”을 “60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공보

(5) 제 387 호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u>617</u>				-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u>521</u>			-				
4급		1	1						
4~5급		3	2			1			
5급 · 지도관		34	12	2	4	1	2	1	12
6급 이하 계		<u>483</u>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연구직 계		2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0	-		-				
지도사		25			-				
기능직 계		<u>65</u>			-				

하동군공보

(6) 제 387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617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02명 2. (생략)							1. ----- : 60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기 관 별 직급 별</th> <th rowspan="2">총 계</th> <th rowspan="2">본 청</th> <th rowspan="2">의 회 사 무 과</th> <th colspan="3">직 속 기 관</th> <th rowspan="2">사 업 소</th> <th rowspan="2">읍 면</th> </tr> <tr> <th>농 기 술 센 터</th> <th>업 부 문 제 센 터</th> <th>보 건 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615</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518</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5급</td> <td>3</td> <td>2</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 지 도관</td> <td>34</td> <td>12</td> <td>2</td> <td>4</td> <td>1</td> <td>2</td> <td>1</td> <td>12</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u>480</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계</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 계</td> <td><u>66</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 관 별 직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농 기 술 센 터	업 부 문 제 센 터	보 건 소	총 계	<u>615</u>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u>518</u>								4급	1	1							4~5급	3	2			1				5급 · 지 도관	34	12	2	4	1	2	1	12	6급 이하 계	<u>480</u>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연구직 계	2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0	-		-					지도사	25			-					기능직 계	<u>66</u>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기 관 별 직급 별</th> <th rowspan="2">총 계</th> <th rowspan="2">본 청</th> <th rowspan="2">의 회 사 무 과</th> <th colspan="3">직 속 기 관</th> <th rowspan="2">사 업 소</th> <th rowspan="2">읍 면</th> </tr> <tr> <th>농 기 술 센 터</th> <th>업 부 문 제 센 터</th> <th>보 건 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61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521</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5급</td> <td>3</td> <td>2</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 지 도관</td> <td>34</td> <td>12</td> <td>2</td> <td>4</td> <td>1</td> <td>2</td> <td>1</td> <td>12</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u>483</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계</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 계</td> <td><u>65</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 관 별 직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농 기 술 센 터	업 부 문 제 센 터	보 건 소	총 계	<u>617</u>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u>521</u>								4급	1	1							4~5급	3	2			1				5급 · 지 도관	34	12	2	4	1	2	1	12	6급 이하 계	<u>483</u>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연구직 계	2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0	-		-					지도사	25			-					기능직 계	<u>65</u>			-				
기 관 별 직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농 기 술 센 터	업 부 문 제 센 터	보 건 소																																																																																																																																																																																																																																																																																																																																																								
총 계	<u>615</u>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u>518</u>																																																																																																																																																																																																																																																																																																																																																													
4급	1	1																																																																																																																																																																																																																																																																																																																																																												
4~5급	3	2			1																																																																																																																																																																																																																																																																																																																																																									
5급 · 지 도관	34	12	2	4	1	2	1	12																																																																																																																																																																																																																																																																																																																																																						
6급 이하 계	<u>480</u>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연구직 계	2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0	-		-																																																																																																																																																																																																																																																																																																																																																										
지도사	25			-																																																																																																																																																																																																																																																																																																																																																										
기능직 계	<u>66</u>			-																																																																																																																																																																																																																																																																																																																																																										
기 관 별 직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농 기 술 센 터	업 부 문 제 센 터	보 건 소																																																																																																																																																																																																																																																																																																																																																								
총 계	<u>617</u>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u>521</u>																																																																																																																																																																																																																																																																																																																																																													
4급	1	1																																																																																																																																																																																																																																																																																																																																																												
4~5급	3	2			1																																																																																																																																																																																																																																																																																																																																																									
5급 · 지 도관	34	12	2	4	1	2	1	12																																																																																																																																																																																																																																																																																																																																																						
6급 이하 계	<u>483</u>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연구직 계	2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0	-		-																																																																																																																																																																																																																																																																																																																																																										
지도사	25			-																																																																																																																																																																																																																																																																																																																																																										
기능직 계	<u>65</u>			-																																																																																																																																																																																																																																																																																																																																																										

하동군공보

(7) 제 387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1월 15일

하동군수

하동군 조례 제2023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의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군 내에 거주하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제1항의 대부방법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를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대출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상환의무자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연리 7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를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처리한다.”를 “금고계약 금

하 동 군 공 보

(8) 제 387 호

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대출 후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 실적)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되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동군공보

(9) 제 387 호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대부신청서

1. 대부신청금액 :

2. 대부신청사유 :

3. 상환방법 및 기간 :

4. 대부신청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원계획 :

(단위 : 원)

총사업비	융자	자부담	자부담방법	비고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총수익	총비용	순수익	비고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사업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인)

하동군공보

(10) 제 387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2. (생략)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 ③ (생략)	제3조(융자대상)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군 내에 거주하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부방법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 ----- ----- -----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상환의무자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생략)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리 7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하동군공보

(11) 제 387 호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할 때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

-----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금고계약 금융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

-----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대출 후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

----- 설치하되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동군공보

(12) 제387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1월 15일

하동군수

하동군 조례 제2024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군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천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하동군공보

(14) 제 387 호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 및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하동군공보

(15) 제387호

-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지원을 할 수 있다.

하동군공보

(16) 제 387 호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와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

제10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하동군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동군공보

(17) 제 387 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 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를 확대

하동군공보

(18) 제 387 호

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공보

(19) 제387호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2)	
지붕면적(m^2)		빗물 저류조 용량(m^3)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m^2)			
빗물 이용 예정 수량($m^3/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m^3/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20) 제 387 호

하 동 군 공 보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 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 설 설치내역	시 설 위 치	
	시 설 용 량	톤
	사 용 용 도	
	설 치 비 용	원
	착 공 일 자	완료일자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공보

(21) 제 387 호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2)
중수처리 용량($m^3/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 ($m^3/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m^3/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 · 오음(誤飲)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22) 제 387 호

하동군공보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m^3 /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m^3 /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m^2]

하동군공보

(23) 제387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3년 11월 15일

하동군수

하동군 규칙 제109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보

(24) 제 387 호

[별표 1]

하동군 본청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9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0	외국인 등록
11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기획감사	12 군민제안
실장	1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재정조기집행 업무 총괄
8	국고예산화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9	지방기금 운영 총괄
10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11	포괄보조사업 총괄 관리

하동군공보

(25) 제 387 호

실과명	분장사무
	다 군정·비위 감사 및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및 규제 개혁
	7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8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9 행정절차제도 운영
기획 감사실장	10 계약심사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마 슬로시티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전반
	2 힐링시티 업무 전반

하동군공보

(26) 제 387 호

실과명	분장사무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9 문화재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11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12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3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14 하동읍성 복원 정비사업 15 하동송림 생육환경개선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6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과장	1 관광진흥 계획수립·조정 2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관리운영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추진 4 관광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5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7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8 기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9 관광시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 녹색관광 홍보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4 야생차문화축제 업무 추진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6 관광마케팅 시책업무 추진 7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8 공동브랜드 관리 9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전반
	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문전성시 사업 포함) 4 삼성궁 및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6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하동군공보

(27) 제 387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하동군 본청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하동군 본청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기획 감사 실장	설과명	분장사무	설과명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가
	1~13	생략	1~13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1~11	생략	1~11
	다	군정·비위 감사 및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다
	1~10	생략	1~10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라
	1~5	생략	1~5
		(신 설)	마
		(신 설)	1
		(신 설)	2

하동군공보

현 행		개 정 안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 관광 과장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1~16 생략	1~16 생략	
	나 슬로시티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전반	1 관광진흥 계획수립·조정	
	2 최첨단디 운영 및 관리	2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관리운영	
	3 토지배경지 복원사업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추진	
	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관광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1 관광진흥 계획수립·조정	5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2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관리운영	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추진	7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4 관광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8 기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5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9 관광시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다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7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1 녹색관광 홍보 종합계획 수립·조정	
	8 기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9 관광시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라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생차문화축제 업무 추진	
	1 녹색관광 홍보 종합계획 수립·조정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6 관광마케팅 시책업무 추진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7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야생차문화축제 업무 추진	8 공동브랜드 관리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9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전반	
	6 관광마케팅 시책업무 추진	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 이병주문화관 운영 및 관리	
	8 공동브랜드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9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전반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문전성시 사업 포함)	
	마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삼성궁 및 천제당 운영 및 관리	
	1 이병주문화관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6 최첨단디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문전성시 사업 포함)		
	4 삼성궁 및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하동군공보

(29) 제387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3년 11월 15일

하동군수

하동군 규칙 제109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공보

(30) 제 387 호

[별표]

보좌·보조기관의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17	263	68	48	9	23	13	21	172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반 직	일반직 계		521	241	66	20	9	8	7	16	154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5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시설		5	4			1				

하동군공보

(31) 제 38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직	6급 소계	149	76	12	7	2	3	1	5	43
	행정	14	13	1						
	세무	1	1							
	사회복지	0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농업	28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0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3	12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농촌지도사	0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5	2		1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0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하동군공보

(32) 제 38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직	7급 소계	158	72	17	6	3	3	2	6	49	
	행정	19	12			1			2	1	3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방송통신	0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	4						2	14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시설	0									
	행정·보건·환경	2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농업·보건·환경	0					.				

하동군공보

(33) 제 38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직	8급 소계	130	54	33	1	2		2	3	35
	행정	13	9					2		2
	세무	1	1							
	사회복지	8	2						1	5
	공업	1			1					
	공업(무대.음향)	0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환경	1	1							
	시설	8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2	5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보건	0								
	행정·시설	5	4			1				
	세무·환경	0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	3							
	녹지·시설	0								
	행정·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0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환경·시설									
	세무·공업·시설									
	보건·간호·의료	2		2						

하동군공보

(34) 제 38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직	9급 소계	9급 소계	46	24	2	2	1	1	0	1	15
	행정	행정	3	2				1			
	전산	전산									
	사회복지	사회복지	10	4							6
	환경	환경	2	2							
	행정·세무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사회복지	5	2					1	2	
	행정·전산	행정·전산									
	행정·농업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행정·시설	9	8			1				
	농업·녹지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시설									
	행정·환경·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하동군공보

(35) 제 38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기능직	기능직 계		65	18	2	3	0	15	4	5	18
	6급 소계		7	2					2	2	1
	사무		3						1	1	1
	운전		4	2					1	1	
	7급 소계		22	5	2	1		2	2	3	7
	운전		11	3	2					2	4
	사무		6			1		1	2		2
	전화상담		1								1
	기계		1					1			
	전기		1	1							
	통신		1								1
	선박항해		1	1							
	8급 소계		18	8		2			0		8
	열관리		1	1							
	선박기관		1	1							
	운전		9	2		1					6
	조무		3	3							
	방호		1			1					
	사무		3	1					0		2
	9급 소계		18	3				13			2
	전화상담										
	기계		3					3			
	열관리·기계										
	운전		3	1							2
	사무										
	조무										
	선박		1	1							
	방호										
	전기		3	1				2			
	전기·통신										
	화공		4					4			
	보건		4					4			

하동군공보

(36) 제 38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정직	별정직계	3	1					2	
	5급상당 소계	1						1	
	행정, 별정	1						1	
	6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구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동군공보

(37) 제 387 호

신·구조 대문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유	면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계	615	261	68	48	9	23	13	21	172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518	239	66	20	9	8	6	16	154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5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수의·(지도)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하동군공보

(38) 제 387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 무 파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 무 파	읍	면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체 육 시 설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일 반 직	8급 소계	129	54	33	1	2		1	3	35				8급 소계	130	54	33	1	2		2	3	35		
	행정	12	9					1		2				행정	13	9					2		2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8	2						1	5				사회복지	8	2					1	5			
	공업	1			1									공업	1				1						
	공업(무대.음향)	0												공업(무대.음향)	0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보건	10		10								
	간호	1		1										간호	1		1								
	의료기술	9		9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식품위생	2		2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8	4							4				시설	8	4						4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2	5							7				행정·농업	12	5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보건	0												행정·보건	0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세무·환경	0												세무·환경	0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2	2											농업·녹지	3	3									
	녹지·시설	0												녹지·시설	0										
	행정·보건·간호	4		4										행정·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0												보건·환경	0										
약무·보건	1		1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환경·시설													행정·환경·시설												
세무·공업·시설													세무·공업·시설												
보건·간호·의료	2		2										보건·간호·의료	2		2									

하동군공보

(39) 제 387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 파	읍	면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체 육 기 설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일 반 직	9급 소계		44	22	2	2	1	1	0	1	15										
	행정		3	2					1												
	전산																				
	사회복지		9	3							6										
	환경		2	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	2						1	2										
	행정·전산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8	7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하동군공보

(40) 제 387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 무 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 무 과	읍	면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체 육 시 설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기 능 적 작 능	기능직 계	66	18	2	3	0	15	5	5	18			기능직 계	<u>65</u>	18	2	3	0	15	4	5	18	
	6급 소계	7	2					2	2	1			6급 소계	7	2					2	2	1	
	사무	3						1	1	1			사무	3						1	1	1	
	운전	4	2					1	1				운전	4	2					1	1		
	7급 소계	22	5	2	1		2	2	3	7			7급 소계	22	5	2	1		2	2	3	7	
	운전	11	3	2						2	4		운전	11	3	2				2	4		
	사무	6			1	1	2				2		사무	6			1	1	2		2		
	전화상담	1									1		전화상담	1								1	
	기계	1					1						기계	1						1			
	전기	1	1										전기	1	1								
	통신	1									1		통신	1								1	
	선박항해	1	1										선박항해	1	1								
	8급 소계	19	8		2			1			8		8급 소계	<u>18</u>	8		2			0		8	
	열관리	1	1										열관리	1	1								
	선박기관	1	1										선박기관	1	1								
	운전	9	2		1						6		운전	9	2		1					6	
	조무	3	3										조무	3	3								
	방호	1			1								방호	1			1						
	사무	4	1					1		2			사무	<u>3</u>	1				0		2		
	9급 소계	18	3				13			2			9급 소계	18	3				13			2	
전화상담												전화상담											
기계	3					3						기계	3					3					
열관리·기계												열관리·기계											
운전	3	1								2		운전	3	1							2		
사무												사무											
조무												조무											
선박	1	1										선박	1	1									
방호												방호											
전기	3	1				2						전기	3	1				2					
전기·통신												전기·통신											
화공	4					4						화공	4					4					
보건	4					4						보건	4					4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3년 11월 15일

하동군수

하동군 규칙 제1096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연대보증인)</u>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연간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 3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여야 한다.	< 삭제 >
<u>제5조(연체이자)</u>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연 7퍼센트로 한다.	< 삭제 >
<u>제6조(체납자 조치)</u> ①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자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한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체납된 상환금 회수에 따른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금을 융자 받은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시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 삭제 >

하동군 고시 제2013 - 6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1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0. 28.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동골길 42-24 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지 참조(1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동군공보

(44) 제 387 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증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57-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동골길 42-24	20070618	나동의 별칭으로 지역의 형태가 고동같이 생겼다하여 고동골이라는 옛지명에서 유래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55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04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텁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749-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726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77-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목암길 16-11	20070618	진간선사가 절터를 잡기 위해 나무오리를 날렸다 해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864-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46-74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0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08	20070618	산복도로의 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08-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08	20070618	산복도로의 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27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21-4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14-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05-12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56-15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693-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암길 21	20070618	면명이 유래된 마을로 청암물길로 명명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산3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966	20070702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89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18-16	2008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23-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주성길 11	20080402	성내라는 성안과 남문이라는 나무촌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40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상성길 52-1	20080402	상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75-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22	20080402	횡천강을 끼고 있다하여 횡천강변길로 명명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133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봉곡길 42-27	20090302	마을 앞산이 황새모양의 지형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02-1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12	20090302	중앙리의 자연마을 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2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145	20090302	해변을 끼고있는 마을의 의미를 유지코자 중평해안길로 명명	신청

하동군 공보

(45) 제 387 호

하동군 고시 제2013-66호

[2013년도 하동군 수렵장 설정 2차고시]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수렵장 설정 2차고시

■ 수렵기간

2013. 11. 1 ~ 2014. 2. 28(약 4개월간)

※ 제외기간 : 2014. 1. 30 ~ 2014. 2. 2(설연휴)

■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하동군 수렵장
- 위치 : 하동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최대 수용인원 : 1,750명
- 총 면적 : 675.24km²(67,524ha)
 - 수렵장 설정면적 : 527.32km²(52,732ha)
 - 수렵장 제외면적 : 147.92km²(14,792ha)

■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12.68km²(1,268ha)
- 공원구역 : 91.02km²(9,102ha)
- 군사시설보호구역 : 4.01km²(401ha)
- 도시지역 : 15.88km²(1,588ha)
- 문화재보호구역 : 1.01km²(101ha)
- 관광지 : 0.93km²(93ha)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지원보호림 : 22.39km²(2,239ha)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문화재에 포함

총기보관 파출소 현황

관리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하동읍내파출소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36	(055)883-0112
화개파출소	하동군 화개면 원탑2길 24	(055)883-2112
진교파출소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114	(055)882-3112
옥종파출소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78	(055)882-8112

* 종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종기출고시간 : am 06:00 이후

종기입고시간 : pm 22:00 까지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하동군청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읍 읍내리 180-3)	055-880-2573
하동읍사무소	하동읍 중앙로 70 (하동읍 읍내리 1198-1)	055-880-6005
화개면사무소	화개면 원탑1길 6 (하동읍 탑리 791-1)	055-880-6055
악양면사무소	악양면 악양서로 357 (악양면 정서리 285-1)	055-880-6084
적량면사무소	적량면 대티길 9 (적량면 관리 47)	055-880-6115
횡천면사무소	횡천면 경서대로 1175-3 (횡천면 횡천리 571-3)	055-880-6143
고전면사무소	고전면 하동읍성로 349 (고전면 범아리 226)	055-880-6176
금남면사무소	금남면 미법마을길 10 (금남면 송문리 806)	055-880-6203
금성면사무소	금성면 신도길 149 (금성면 궁항리 876)	055-880-6235
진교면사무소	진교면 민다리안길 62 (진교면 진교리 338-1)	055-880-6264
양보면사무소	양보면 진양로 736 (양보면 운암리 226-1)	055-880-6305
북천면사무소	북천면 경서대로 2451 (북천면 직전리 631-5)	055-880-6336
청암면사무소	청암면 청학로 672 (청암면 평촌리 611)	055-880-6366
옥종면사무소	옥종면 덕천로 3 (옥종면 청룡리 119-4)	055-880-6395

※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하동군공보

(46) 제 387 호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2차)

■ 단기 포획승인권 및 수렵장 사용료

단기간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설정자(또는 대리인)에게 사전에 포획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 지정된 계좌에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단위 : 천원)

영구별		기간별		기 간 별 (천원)	
		30일	10일	300천원	250천원
1종 영종	적색포획승인권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멧돼지 고라니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2개(마리) 1개(마리) 3개(마리) 3개(마리) 2개(마리)	1개(마리) 1개(마리) 2개(마리) - 2개(마리)	
1종 (영종 공기종) 및 2종	황색포획승인권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고라니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2개(마리) 10개(마리) 3개(마리) 4개(마리)	1개(마리) 5개(마리) - 4개(마리)	200천원 150천원
	청색포획승인권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8개(마리) 3개(마리) 2개(마리)	4개(마리) - 2개(마리)	100천원 50천원

* 조류1종 : 꿩, 멧비둘기, 참새

* 조류2종 :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중 영종 소지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 추가 확인표지(Tag) 개별 구매

포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확인표지(Tag)를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렵장 설정자(또는 대리인)에게 구매 가능한 확인표지(Tag)를 확인 받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확인표지(Tag) 개별 구매 가격

(단위: 원, 마리)

확인표지 종류 (Tag 종류)	단 가	비 고
멧돼지	100,000	
고라니	20,000	
조류1종	3,000	꿩, 멧비둘기, 참새
조류2종	3,000	오리류 (2종)

※ 추가 확인표지(Tag)는 포획승인서를 교부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구매가 가능 합니다.

[납부한 확인표지(Tag)의 금액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단기포획승인신청 및 추가확인표지(Tag)구매 방법

■ 단기포획승인권 승인

• 단기포획승인권을 승인 받고자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관리협회」에 단기포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표지(Tag)의 잔량에 따라 승인가능 여부를 결정 받은 후 (입금계좌번호 문자메시지 송부) 개인별로 통보받은 지정된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확인표지(Tag)의 잔량이 소진된 경우 입금계좌번호가 송부되지 않습니다.

• 확인표지(Tag)의 잔량은 <http://www.huntingtag.co.kr/tag>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확인표지(Tag) 구매

• 추가확인표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관리협회」에 추가확인표지(Tag)구매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표지(Tag)의 잔량에 따라 구입가능 여부를 결정 받은 후 (입금계좌번호 문자메시지 송부) 개인별로 통보받은 지정된 계좌에 구매금액을 납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표지(Tag)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확인표지(Tag)의 잔량이 소진된 경우 입금계좌번호가 송부되지 않습니다.

• 확인표지(Tag)의 잔량은 <http://www.huntingtag.co.kr/tag>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기포획승인신청 및 추가확인표지(Tag) 구매 방법

• 접수기간 : 2013. 11. 12(화) ~ 수용인원 및 확인표지(Tag) 소진 시 까지

• 접수시간 : 매일 09:00시 ~ 18:00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하동군공보

(47) 제 387 호

- 제출서류:

[단기포획신청서 제출서류]

- ①수렵야생동물 단기포획승인 신청서 1부
 - ②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추가확인표지(Tag)구매 신청서 제출서류]

- ①수렵야생동물 추가확인표지(Tag) 구매 신청서 1부
 - ②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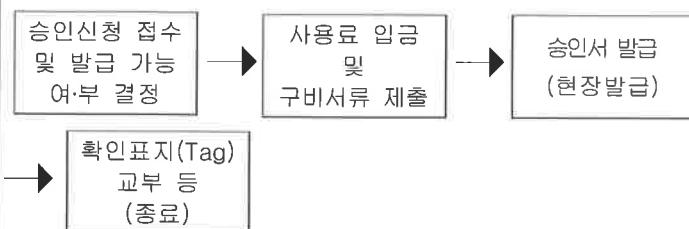
•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 신청 시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보낸 뒤 원본을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경남지부)



※ 방문접수 및 발급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단기포획승인신청서 및 추가확인표지(Tag)구매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hadong.go.kr> (하동군 홈페이지)

- 접수처

변경고시

○ 수렵대상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사유
조류 2종	오리류 5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오리류 2종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 고방오리 개체수 감소로 수렵대상 제외
기타조수류	청설모, 어치, 까지,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청설모, 어치, 까지,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개체수 감소로 수렵대상 제외

* 환경부 자연정책과-4952(2013. 11. 6)호에
의거 「2013년 수렵장 설정지역 겨울철새 서식밀도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조류2종 및 기타조수류 수렵
대상 종류를 변경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Tag)에 포획일시·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얹고 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야생동물을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포획승인서 뒤쪽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기재하여 수렵동물 확인표지(Tag)를 발급한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사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확인표지(Tag) 및 수렵동물을 훼손 또는 가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 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을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하동군공보

(48) 제 387 호

- 업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진 진 후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 수렵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되 1인당 엽견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엽견분실에 대비하여 수렵장 출입전 엽견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 등을 엽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을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

속하게 신고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니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렵관련 별칙 규정

■ 별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55조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자

■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56조 제1항내지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해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
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떠는 낙하 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자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수렵종기 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출고는 오전 06:00부터

- 총기입고는 매일 밤 10시까지,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입고시 장전여부 등 안전확인 필히 하고 음주상태로 총기 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하동군공보

(50) 제387호

하동군 고시 제2013 - 6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2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11.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210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지 참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파(☎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동군공보

(51) 제 387 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증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산15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85-119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33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90-116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월길 64-1		20070618	공월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성평길 27-1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성평길 27-13	20070618	성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성평길 27-1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성평길 27-13	20070618	성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225-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404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481-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가리골길 56	20070618	신촌마을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그 지형이 엇가리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210	2007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성에 먹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산109-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398	20070702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8-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32-76	2009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신청